

# 200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 신축 공동주택 새집증후군 원인물질(6종) 권고기준 시행

금년부터 수도권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며,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품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중전 유탄유·휴대폰 등 18개 품목에서 프린트·복사기·팩시밀리까지 2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6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분야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편집부〉

## 〈 2006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
1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 시행	〈신 설〉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자연경관영향 협의(심의·검토) - 자연경관영향 심의(환경부·지방환경관서) :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 지역의 경계로부터 300m~2km 이내의 지역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과 그 밖의 지역(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중 자연경관영향이 큰 사업 - 자연경관영향 검토(지방자치단체) : 자연공원 등 보호지역 주변지역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과 그 외의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자연 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006.1)	자연정책과 ☎ (02) 2110-673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
7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을 전제로 한 행정계획 중 49개 행정계획에 대해서만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li> <li>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가 행정계획 확정 전(개발사업은 허가 전) 단계에서 실시됨</li> <li>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 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140여개로 확대)</li> <li>사전 환경성 검토 시기를 개발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실시하도록 함</li> <li>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의무화</li> </ul>	환경정책기본법 (2006.6)	국토환경보전과 ☎ (02) 2110-7969
3	자동차 연료 환경 품질등급제 실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연료 품질등급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li> <li>- 수도권 지역 저유소 및 주유소 대상으로 자동차 연료 품질검사 실시</li> <li>-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반 기별로 실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li> </ul>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29조(2006.1)	대기정책과 ☎ (02) 2110-6776
4	도심지역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기준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 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하여 관련 관리기준 등을 강화</li> <li>- 특정공사 시 방음시설 사전설치 의무화</li> <li>- 정온지역의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li> <li>-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초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강화</li> </ul>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의 2 (2006.1)	생활공해과 ☎ (02) 2110-6814
5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제정·시행</li> </ul>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2(2006.1)	생활공해과 ☎ (02) 2110-6818
6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검증율 실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염원인자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하는 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토양관련 전문가기관으로부터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li> </ul>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제1항 (2006.1)	토양지하수과 ☎ (02) 2110-676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
7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는샘물 : 평균판매가격의 7.5%</li> <li>○ 기타샘물 : 샘물 생산원가의 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는샘물 : 평균판매가격의 6.75%</li> <li>○ 기타샘물 : 수도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과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을 더한 금액</li> </ul>	먹는물관리법 제 2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2006.7)	토양지하수과 ☎ (02) 2110-6768
8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 등 10개 기관을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도소·구치소·소년원 의무실, 기업체 부속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태반재활용신고사업장 등 5개 기관을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추가 지정(10개→15개)</li> </ul>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2006. 1)	산업폐기물과 ☎ (02) 2110-6943
9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 품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윤활유, 휴대폰 등 18개 품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린트, 복사기, 팩시밀리 3개 품목 추가(18개 → 21개)</li> </ul>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006.1)	자원재활용과 ☎ (02) 2110-6953



**생활정보**

알아두면 좋아요!!!

**2006년 세제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 주택 증부세 대상 확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올해에는 6억원으로 낮아진다.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 거래세 인하

개인 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과표는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가 과세

올해부터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